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12. 13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3년 11월 9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4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3. 11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이병숙)

- 가. 제안이유
 - 정부 및 지자체에서 70% 이상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 자부담보험료를 추가지원하고,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을 모집인으로 운영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으로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 -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3조)
 - 목적물 및 지원대상·내용(안 제4조~제6조)
 - 보험금 지급방법 등(안 제7조)
 - 가입 홍보 및 촉진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○ 본 조례안은

- 정부 및 지자체에서 70% 이상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 자부담 보험료를 추가지원하고,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을 모집인으로 운영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으로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제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이고 8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는 보험목적물로 단독주택·공동주택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·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으로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단독주택·공동주택의 소유자·세입자와 소상공인으로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에서는 「풍수해보험법」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풍수해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8조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풍수해보험 모집인으로 통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선정된 모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 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우리 구는 기록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올해는 문래동 상가가 침수되는 등 사전적인 풍수해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풍수해보험료 지원 및 보험모집인 선정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풍수해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7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정부 및 지자체에서 70% 이상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 자부담보험료를 추가지원하고,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을 모집인으로 운영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으로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원계획 수립·시행(안 제3조)
- 다. 목적물 및 지원대상·내용(안 제4조~제6조)
- 라. 보험금 지급방법 등(안 제7조)
- 마. 가입 홍보 및 촉진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풍수해보험법」
- 나. 예산조치: 2024년 예산 반영 예정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- 다. 협의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 - 2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
 - 3) 행정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3. 10. 5.~ 10. 25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풍수해보험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풍수해보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지원계획 수립·시행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보험목적물)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(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)으로 한다.

1. 「건축법」에 따른 단독주택·공동주택
2. 「소상공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

제5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, 보험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.

1. 「건축법」에 따른 단독주택·공동주택(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)의 소유자 및 세입자

2. 「소상공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제6조(보험료 지원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.

제7조(보험금의 지급방법 등) 보험금의 지급방법 등은 「풍수해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다.

제8조(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촉진)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을 모집인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모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 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내역

- 풍수해보험 모집인 수당: 100,000천원
 - 주 택: 10천원 * 5,000건 = 50,000천원
 - 소상공인: 10천원 * 5,000건 = 50,000천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풍수해보험 모집인 수당 소요예산: 100,000천원(3억원 미만)
- 차년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인 수당 지급 추진
- 필요시 지속사업 여부 검토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김선재
연 락 처	02-2670-3065